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 부품국산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방산부품개발팀을 신설하며, 대형 항공기사업 관련 외국 정부 및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6급 1명)을, 국방우주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6. 25. ~ 07. 0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방 사이버보안 위협관리 제도 운영 및 업무 지원

제9조제2항 중 “방산정책과·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절충교역과·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을 “방산정책과·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절충교역과·인증기획과·원가관리과 및 방산부품개발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방산부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부품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발전
2. 부품국산화 사업 조정·통제 및 현황관리
3. 부품국산화 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제10조제4항제2호 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1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수출허가·상황허가·경유 또는 환적허가·중개허가

제24조제1항 단서 중 “1명(7급 1명)”을 “2명(6급 1명, 7급 1명)”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1명(7급 1명)”을 “2명(7급 2명)”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물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1”을 “102”로 한다.

별표 2의6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물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1”을 “102”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물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8”을 “90”으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물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를 “112”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물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5”를 “56”으로 한다.

별표 3의4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물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8”을 “90”으로,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물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를 “112”로,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

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5”를 “56”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0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
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
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

국방부령 제11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
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
원되는 별표 2의2 및 별표2의6의 정원 1명(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
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
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8년 6월 3
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 및 별표3의4의 정원 1명(행
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 및 별표 2의6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6의 정원 1명(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 및 별표 3의4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 및 별표 3의4의 정원 2명(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생략) ⑥ 삭 제 ⑦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13. (생략) <u><신 설></u>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⑦ ----- ----- -----. 1. ~ 13. (현행과 같음) <u>14. 국방 사이버보안 위협관리 제도 운영 및 업무 지원</u>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생략)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u>방산정책과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절충교역과 · 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u> 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생략) ④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u>1. 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조정 · 통제</u> 2. · 3. 삭 제 4. ~ 11. (생략)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방산정책과 ·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 절충교역과 · 인증기획과 · 원가관리과 및 방산부품개발팀</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삭 제></u> 4. ~ 11.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략)

<신설>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 ③
(생략)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
기술기획서 작성

3. ~ 8. (생략)

⑤ (생략)

⑥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
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2. ~ 20.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방산부품개발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부품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발전

2. 부품국산화 사업 조정·통제
및 현황관리

3. 부품국산화 사업 관련 협의
체 운영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3.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대외무역법」 제19조의2부
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수
출허가·상환허가·경유 또는
환적허가·중개허가

2. ~ 20. (현행과 같음)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③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u>1명(7급 1명)</u>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⑤ (생략)	----- ----- ----- ----- <u>2</u> <u>명(7급 2명)</u>----- -----. ④·⑤ (현행과 같음)
국방부령 제110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110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u>2027년 1</u> <u>2월 31일</u>-----.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명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며, <u>2026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 ----- ----- <u>2027년 12월 3</u> <u>1일</u>----- <u>2028년 1월 1</u> <u>일</u> ----- -----.
국방부령 제11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국방부령 제11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5년</u> <u>12월 31일</u> 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 <u>2027년 1</u> <u>2월 31일</u> -----.
--	--

신·구정원대비표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 산 사 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01</u>	<u>102</u>	+1
•	•	•	
•	•	•	

[별표 2의6]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1항 단서 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 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 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 · <u>101</u> · ·	· · <u>102</u> · ·	+1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88</u>	· · <u>90</u>	+2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 ·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 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4</u>	<u>112</u>	-2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 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 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 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 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5</u>	<u>56</u>	+1

	.	.	.	
	.	.	.	

[별표 3의4]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군인 제외) 정원표
(제24조제3항 단서 및 국방부령 제1166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 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88</u>	· · <u>90</u>	+2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 ·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 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4</u>	<u>112</u>	-2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 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5</u>	<u>56</u>	+1
·	·	·	
·	·	·	